

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7 월 11 일

여 수 시 장

2023.7.11



여수시 조례 제1900호

붙임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출향인”이란 「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,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(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3. “교류·협력사업”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·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(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,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여수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)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향우인증(이하 “여수향우인증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수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수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.

-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출향인”이라 함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출신으로 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(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)을 말한다.	1. “출향인”이란 「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,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(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교류사업”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공동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의 협력을 말한다.	3. “교류·협력사업”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·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.
제3조(출향인의 지위) ①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다.	제3조(출향인의 지위) ①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(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,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5조(여수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)

-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향우인증(이하 “여수향우인증”이라 한다,)을 신청하는 경우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수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수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.
-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5조 ~ 제8조 (생략)

제6조 ~ 제9조 (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)

여수시 조례 제 호

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,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출향인”이란 「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,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(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“향우회”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·직능별 모임을 말한다.
- “교류·협력사업”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·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출향인의 지위) ①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(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,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- ② 출향인 또는 향우회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제4조(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·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시정 시책 및 축제·행사 홍보사업
- 시와 향우회 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
- 고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사업

4. 향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·송년·초청 간담회 등 각종 행사
5. 지역 농·수·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여수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)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향우인증(이하 “여수향우인증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수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수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.

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6조(업무관장) ① 시와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.

② 세부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시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여수향우인증 (재)발급 신청서

신청인	등록기준지							
	현주소							
	성명		(남 / 여)					
	소속 향우인회							
	연락처		주택			핸드폰		
발급대상	관계	성명 (한자 및 영문)	성별	생년월일	직업	주소		비고 (주요경력)
첨부서류	1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· 초본 각 1부 2. 사진(3.5cm × 4.5cm) 2장							

「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

여수향우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여수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(앞면)

사 진	여 수 향 우 인 증		
	제		호
	성 명 :		
	생년월일 :		
	출신지(읍·면·동) :		
주 소 :			
년 월 일		직 인	
여 수 시 장			

규격 : 85mm × 54mm

(뒷면)

 여수시 YEOSU CITY
「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여수향우인임을 증명합니다.
※ 이 증을 소지한 여수향우인은 「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

※ 비고란에는 신규, 재발급으로 구분